

제195회 영등포구의회
2016년도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6. 6. 21.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基 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40호로 2016년 6월 2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6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2016. 7. 1.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전면시행에 따른 주민 주인 되는 자치회관 구현을 위한 제도 마련

3. 주요내용

가. 자치회관 운영주체 “민간운영자” 정의 및 책임

(안 제2조제3항, 안 제7조제8항)

나. 자치회관 시설보험 가입 주체 변경 및 의무화(동장→구청장)

(안 제11조제5항)

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수 확대 (안 제17조제1항)

(15명 이상 25명 이내 → 20명 이상 50명 이내)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자치법」 제9조

나. 예산조치: 별도 예산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복지생태계와 마을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한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 2016. 7. 1. 전 동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사업 추진 취지에 부합되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한 자 및 자치회관 운영을 수탁한 자를 ‘민간운영자’로 정의하고 (안 제2조제3호), ‘민간운영자’는 자치회관 운영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며 (안 제7조제8항),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규정(안 제13조제3항) 하였는바, 이는 주민에게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여 마을공동체 형성 초기단계부터 주민 참여를 적극 유도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 자치회관 이용자의 신체상 피해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시설 보험은 가입주체를 동장에서 구청장으로 상향 조정하고 가입을 의무화 (안 제11조제5항) 하였는바, 이는 구청장 (재무과)이 일괄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 또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인원을 현행 25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확대하고, 위원수를 20명부터 50명까지 범위를 넓게 하였는바(안 제17조제1항),

15명 이상 25명 이내 ⇒ 20명 이상 50명 이내

이는 보다 많은 지역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동별 여건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가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한 것으로 보이나, 현재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현황과 운영실태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주민자치위원회 구성현황 첨부)

아울러, 여성위원의 참여를 전체위원의 40%이상으로 확대한 것은(안 제17조제3항),

전체위원의 1/3 이상 ⇒ 전체위원의 40% 이상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1)에 규정된 ‘특정 성별 10분의 6 초과 금지 조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보임.

- 기타, 연임하는 주민자치위원 4시간 의무적 교육이수, 분과위원회 설치 등의 규정을 신설 하였으며, 입법체계나 자구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 1)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